

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
공 시 최 고

사 건 2007카공 31 공시최고

신 청 인 변 애 자

광주 북구 중흥1동 748-22

신청인의 이 사건 공시최고신청을 허가하는 바, 아래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8. 1. 21. 14:00 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.

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.

2007년 10월 9일

판사 이동철

증서의 중요한 취지

●종 류 : 자기앞수표

●번 호 : 가가17055605-가가17055674(각 10만원권)

●액 면 : 금100,000원(총 70매)

●발행일 : 2007년 10월 2일

●발행인 : 거창대동우체국